

20년 노인일자리사업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계획(안)

(한국노인인력개발원 감사팀, '20.02.25.(화))

1] 목적

- 노인일자리사업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재정누수 방지

2] 추진방안

- 온·오프라인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

- 온라인 : 우리원 홈페이지에 부정수급 신고 페이지 구축·운영으로 신고·부정수급 개념·신고처리 절차 등 종합안내

- 온라인 신고방법

- 개발원 홈페이지 접속하여 신고자 실명, 연락처, 신고내용 기재
- 6하원칙에 따라 부정수급 내용을 작성하고 증빙자료 첨부
- ※ 신고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절차 진행

- 오프라인 : 전국대표번호(☎ 1544-7730) 전화신고 체계 구축

- 신고 보완

-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질 때 신고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

- 신고 종결

-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
-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증명할 증거가 없는 경우(자료 보완 요청 2회 이상에도 보완하지 않을 경우 종결 가능)
-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
- 해당 신고 건에 대하여 다른 기관에서 감사·수사·조사 중이거나 이미 끝난 경우
- 신고 내용이 부정수급과 관련이 없는 경우

○ 신고자 보호

- 신고자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·보도 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 철저

※ 단, 신고자 등이 동의한 때는 가능

○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상한액 확대(“20년 이후 신고부터 새 상한액 기준 적용)

- 부정수급액의 10%(최고 500만원, 최저 20만원)를 포상금으로 지급하여 신고 활성화

※ 전년(부정수급액의 1%(최고 200만원, 최저 10만원) 포상) 대비 포상 비율 및 금액 상향

- 포상금 지급사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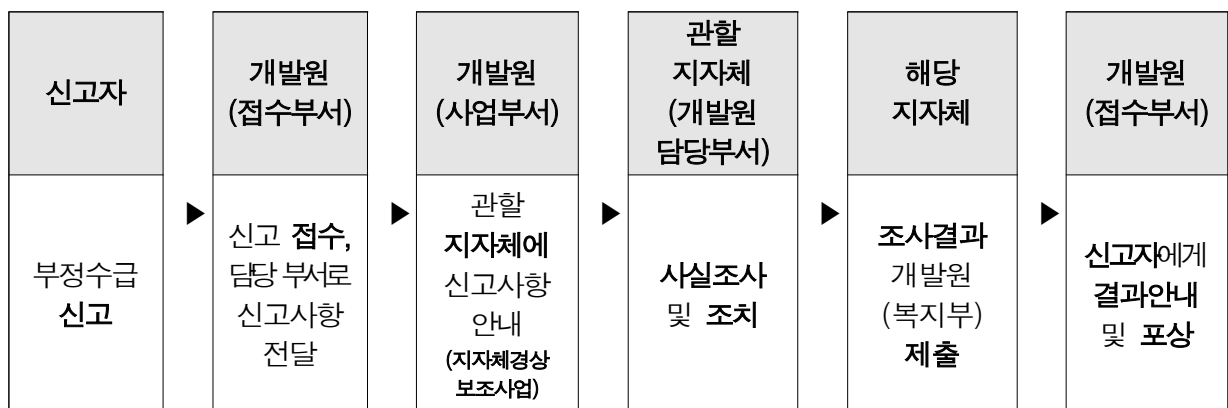
- 부정수급 조사결과(개발원, 지자체, 검·경찰) 사실로 확인되어 부정수급 통지(환수 통지) 후 부정수급자의 이의제기 없이 환수가 완료된 경우
- 부정수급자가 이의신청·행정심판·행정소송을 제기한 때는 그 결과가 부정수급으로 결정 후 환수가 완료된 경우
- 신고자로부터 포상금 신청에 의해 지급을 원칙으로 함(단, 자력으로 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고령자 등은 예외지급)

※ 단,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청구 및 강제집행을 하였으나, 부정수급자의 객관적 반환 여력이 없거나 또는 이외의 사실상 반환 불가능 상태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직후 포상금 지급 가능

○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홍보 추진

- 우리원 홈페이지 및 업무시스템 메인화면에 “부정수급 신고센터” 배너 운영
- 우리원에서 배포되는 각종 인쇄물에 부정수급신고센터 안내
- 부정수급신고센터 홍보 포스터 등 인쇄물 제작 및 배포

③ 신고처리 절차



4 추진일정

세부사업내용	월별추진일정											
	1	2	3	4	5	6	7	8	9	10	11	12
○기본계획 수립	→	→										
○전국대표전화 신고접수 운영	→	→	→	→	→	→	→	→	→	→	→	→
○홈페이지 신고접수 운영	→	→	→	→	→	→	→	→	→	→	→	→
○부정수급 신고 대외 홍보			→	→	→	→	→	→	→	→	→	→
○부정수급 신고 접수 및 처리	→	→	→	→	→	→	→	→	→	→	→	→